



Monthly Tax Newsletter

Issue 95 | May 2022

삼성KPMG 세무본부 TKC

Contents

Page

소득법인세 분야

2

- [심판례] 쟁점장애인가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심판례] 쟁점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기각)
-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3, 제16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예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호에 규정된 “영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의미

재산소비세 분야

4

- [심판례] 취득 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 쟁점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심판례] 전월 26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제공한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당월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취소)
- [심판례] 쟁점거래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의 단단계 거래로 보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심판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예규] 제안공모 방식으로 부동산 매각 시 기존 건물가액 및 개발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예규] 해외직송거래 시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지방세 분야

9

-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심판례] 쟁점증환지의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예규] 대도시 내 피합병법인 신축 건축물을 합병으로 취득한 경우 세율적용

관세 분야

11

- [심판례]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심판례] 쟁점물품(Home Charger)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으로 보아 HSK 제8504.40-3010호(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범용 사용이 가능한 ‘기타 기기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HSK 제8504.40-3090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취소)

소득법인세 분야

[심판례]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22서1526, 2022. 5. 2.

[사안]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법인세제과-145, 2018. 2. 21.) 등을 근거로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함.

[판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제28조)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제33조)하도록 하고 있는 점,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항목 관련 규정의 제·개정 경위 및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손금불산입 항목은 입법정책 내지 조세정책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당초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성을 인정하였던 규정이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삭제되었고 과거에 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월등히 높아졌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유권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말하는 공과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사회통념상 타당함.

[TKC 코멘트]

• 위 심판례는 기존 심판례(조심 2021서0711, 2021. 8. 6.)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

[심판례] 쟁점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21서5749, 2022. 4. 28.

[사안] 청구법인은 외부업체에 설계비용으로 지급한 대가인 위탁개발비용(“쟁점위탁개발비용”)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발생시키고, 고유한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비용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쟁점위탁개발비용은 아파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주 설계비용으로, 평면도 변경, 조경설계, 시설물 구조설계의 활동은 일반적인 설계활동으로 보이고, 필로티 설계 중앙커뮤니티 센터, 4BAY 설계 등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신청한 내·외부 디자인 설계는 일반적인 건축표현방법으로 볼 수 있어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의3, 제16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및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소득-0358, 2022. 4. 12.

2013년 7월 부여받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2022년 3월 행사하는 경우에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2021. 12. 28. 법률 제 186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및 같은 법 제16조의4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중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각각 적용되는 것임.

[TKC 코멘트]

- 위 국세청 예규는 2021. 12. 28. 개정규정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2014. 12. 2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당시 부칙에서 이 법 시행(2015. 1. 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규정과 충돌함. 결국, 이러한 국세청 해석은 개정 부칙과 종전 부칙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개정 부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됨.

[예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호에 규정된 “영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의미

서면-2021-법규소득-2864, 2022. 4. 1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호의 “영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란 해당 법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하는 것임.

재산소비세 분야

[심판례] 취득 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 쟁점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조심 2021중0614, 2022. 4. 13.

[사안]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증여 받은 후 거주자로서 양도한 다음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이하 부분은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며, 9억원 초과부분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중 전체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우대공제율(9년, 72%)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전체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일반공제율(9년, 18%)과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우대공제율(3년, 24%)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결정함.

[판단]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은 거주자인 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우대공제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1세대 1주택자가 비거주자로서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기간에 대하여 일반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거주자로 양도하는 경우 또한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기간에 대하여 우대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해석 형평상 맞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주택을 보유하던 거주자가 양도 시에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다주택 보유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 우대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비거주자로서 보유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총 기간을 대상으로 우대공제율을 산정하는 것이 법해석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 소득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후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만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례] 전월 26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제공한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당월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21소6612, 2022. 4. 19.

[사안] 청구법인은 운송 및 복합물류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A사가 판매하는 가구제품에 대한 운송 및 설치용역(“쟁점용역”)을 A사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수취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사에게 발급한 월합계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기간이 2역월(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함(A사의 관할 세무서장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A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

[판단] 설치용역의 미완결에 따른 용역비의 미확정건 현황표 및 업무절차도 등을 살펴보면, “고객측의 사유”나 “A사측 사유” 그리고 “설치기사의 사유”로 인한 용역비 미확정은 매월 1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이 A사에게 제공하는 운송 및 설치용역은 해당 용역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용역은 공급과 동시에 관련 용역대가가 확정되기 어렵고, 이러한 용역대가가 미확정되는 빈도나 횟수 및 이로 인한 추가 작업을 고려한다면 공급대가가 확정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A사에게 운송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 것은 배송지연이나 추가 작업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실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용역대가의 확정을 위해 시일이 필요한 사정을 고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대가가 확정되는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지연발급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TKC 코멘트]

-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급시기가 배송 및 설치가 완료되는 때라는 전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당월 25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됨)는 적격한 월합계 세금계산서(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되어야 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이에 반하여 조세심판원은 배송 및 설치 완료 시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공급가액의 확정시점(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인 당월 25일)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것인바, 이는 결국 쟁점세금계산서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로서 적격인지(1역월 요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임.

[심판례] 쟁점거래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의 다단계 거래로 보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21광0901, 2022. 4. 19.

[사안] 청구인은 A사의 100% 지분을 소유한 지배주주이고, A사는 B사 및 건설업 관련 계열사 등 총 26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기업집단 甲”)을 구성하고 있음. B사 계열 시행사(“양도시행사”)는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A사 계열 시행사(“양수시행사”)에 양도하였고, 양수시행사는 A사와 주택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쟁점거래”)하였음.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청구인이 상속세법 제45조의3 규정(“쟁점조항”)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을 회피하고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쟁점거래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양도시행사와 A사가 주택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시행사로부터 A사의 도급공사 관련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출에 대해 쟁점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함.

[판단] 기업집단 甲에서 실시한 외부 용역자문 및 내부 계획문서 등에 의하면 쟁점조항 신설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시행사가 양수시행사에게 택지를 전매할 당시 양수시행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에 비추어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의 개정취지와 같이 양도시행사의 유동성 보완 등을 위해 택지를 양수시행사에게 전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목적이 기업집단 甲의 경영상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양도시행사가 택지를 양수시행사에게 전매할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양수시행사 및 A사가 쟁점거래를 실행한 것이 쟁점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 이외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거래인 쟁점거래의 형식을 재구성하여 쟁점거래에 따른 A사의 매출액이 쟁점조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근거로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조심 2021서0914, 2022. 5. 2.

[사안] 청구인은 A사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60%(180만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0년에 퇴사하였는데, 이후 자신의 처남이자 A사의 대표이사인 甲, 조카이자 甲의 자녀인 乙, 丙에게 위 주식 중 일부를 양도 및 증여함. 한편, 조사청은 2019. 2. 26. 부터 2019. 6. 4. 까지 A사의 법인 통합조사(2014 내지 2017 사업연도)를 실시하였는데, 2019. 4. 9. A사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2005. 12. 1. 청구인이 甲에게 자신이 보유한 A사 주식의 일부(“쟁점주식”)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쟁점양도합의서”)를 제출받았음. 또한 조사청은 위 조사기간 중인 2019. 5. 8. 부터 2019. 6. 2. 까지 청구인, 甲, 청구인의 배우자 丁(“청구인 등 3인”)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증여세 세무조사(“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을 제외한 甲, 丁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위법 및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에 대해 권리보호 심의요청을 신청하여 시정결정을 받았고, 이에 조사청은 甲, 丁에 대한 1차 세무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1차 세무조사 중 2012년, 2014년 조사는 직권 취소하고, 쟁점양도합의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甲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고지함.

[판단] 청구인이 권리보호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은 문제가 된 주식거래의 당사자로서 甲, 丁 와 같은 권리의 침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에 대한 쟁점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착수 이전 세무조사 통지 등이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세무조사이고, 쟁점세무조사 실시 전 법인통합조사 시 사실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근거인 쟁점양도합의서는 이러한 위법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된 자료로 양도합의서상 양도조건 중 지분 포기는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丁이 소유 계좌내역상 입금자도 甲이 아닌 등 명백한 탈루혐의의 근거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한 점(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예규] 제안공모 방식으로 부동산 매각 시 기존 건물가액 및 개발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21-법규부가-6959, 2022. 4. 6.

사업자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입찰자들의 매수 의향서 또는 개발 계획서를 제출 받아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최종 계약(협약) 후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매각대금(토지, 건물, 개발수익금)을 받는 경우로서

1.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및 해당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0”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개발수익금이 토지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예규] 해외직송거래 시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18, 2022. 4. 26.

국내사업자(“甲”)가 국외사업자(“乙”)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 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부받아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동 선하증권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됨. 이는 본건 화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TKC 코멘트]

- 위 기재부 예규는 기존 국세청 예규를 뒤집은 것임.
- 기존 국세청 예규(법규부가 2012-310, 2012. 9. 10.)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A법인)에게 국외법인이 생산한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A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A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음.

지방세 분야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

[사안]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2. 25. 원고 소유의 성남시 토지(“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주장함.

[판단] 원고는 표준지로 선정된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청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또한,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은 표준지 인근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 등의 수용 경과 등에 비추어 표준지공시지가의 확정 전에 이를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수용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TKC 코멘트]

- 대법원은 위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달리 개별공시지가결정과 후행처분(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후행처분(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대법원 1996. 6. 25. 선고 93누17935 판결 등).

[심판례] 쟁점증환지의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1지2581, 2022. 3. 14.

[사안] 청구법인은 쟁점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쟁점조합의 조합원으로, 쟁점도시개발사업의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된 쟁점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쟁점증환지”)를 연부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청산금을 지급하였고, 위 납부액에 유상승계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원시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함.

[판단] 2016. 12. 27. 개정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원시취득과 관련하여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개정 괄호규정”)하고 있고, 쟁점증환지는 쟁점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와 교환으로 같은 사업 구역 내 이미 존재하는 상태의 환지를 할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쟁점증환지의 취득은 위 개정 괄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원시취득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증환지의 취득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원시취득)가 아닌 제7호(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임. 또한 위 개정 괄호규정의 내용 및 개정취지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규정은 원시취득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은 아니라고 보므로, 위 개정 괄호규정 시행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연부취득 부분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

[TKC 코멘트]

-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 증환지에 관한 정의는 도시개발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등에서 찾을 수 없음. 부동산용어사전에 따르면 환지의 한 방법으로 환지 기술상 필요에 의해 권리면적보다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함.

[예규] 대도시 내 피합병법인 신축 건축물을 합병으로 취득한 경우 세율적용

부동산세제과-684, 2022. 3. 11.

합병 이전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발행 주식을 100% 인수한 상황에서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쟁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거쳐 신축에 이르렀고,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한 점을 고려할 때, 합병법인이 당초 본점 사무소를 신축한 원시취득자의 지위에서 해당 부동산을 본점 사무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하므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단서에 따라 합병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세 분야

[심판례]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21관0150, 2022. 4. 20.

[사안] 청구법인은 2015. 1. 7. 부터 2018. 3. 9. 까지 쟁점수출자와 계약을 하고, 특수관계자인 FFF 공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 하면서 쟁점수출자의 인증번호를 기재하고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음.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모두 본사의 지배와 통제를 받으며, 처분청은 2018. 7. 30. 청구법인에 대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원산지 적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워 CCC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함.

CCC 관세당국은 두 차례 걸쳐 검증요청 물품 중 일부물품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아니고 CCC 수출자가 아닌 본사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함.

이에 따라, 처분청은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경정·고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11. 3. 심판청구를 제기 함.

[판단] FTA 관세특례법 제11조 제1항에서도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에 따르면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국에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증에 대한 회 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 자격 부여 를 거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처분청은 CCC 관세당국으로부터 2차례 검증결과를 회신받았고, 그에 따르면 검증요청 물품 중 일부물품은 원산지 를 확인할 수 없거나 원산지물품이 아니고 한-EU FTA 에서 6,000 유로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자가 쟁점수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협정관세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TKC 코멘트]

-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첨부서류 제출을 간 소화할 수 있는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제도로, 특히 한-EU FTA 에서는 6,000 유로 초과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함. 그러나 특히 특수관계가 있는 다국적기업일수록 본사의 영향력이 크고 비인증수출자가 쟁 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 이미 조심 2017관0068, 2018. 10. 23. 에서도 한-EU FTA 상 비인증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유사한 처분이 있음.

[심판례] 쟁점물품(Home Charger)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으로 보아 HSK 제8504.40-3010호(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범용 사용이 가능한 ‘기타 기기의 배터리 충전기’로 보아 HSK 제8504.40-3090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취소)

조심 2021관0036, 2022. 4. 26.

[사안] 청구법인은 Home Charger(쟁점물품)을 2016. 3. 30. 부터 2017. 10. 31. 까지 제8504.40-3010호(전기통신용 기기의 배터리 충전기, 협정관세율 0%)로 수입신고함.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2017. 7. 24. 동종물품(정격출력 5V, 2A, 일반충전)에 대해 휴대전화, MP3, 디지털카메라 등 범용으로 사용하다는 점을 들어 기타 기기의 배터리 충전기가 분류되는 제8504.40-3090호(관세율 8%)로 결정함.

따라서 처분청은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른 정정안내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19. 10. 30. 쟁점물품에 대해 수정신고하며 관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2020. 10. 12., 2020. 12. 7. 쟁점물품은 제8504.40-30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기각하여 2021. 2. 17. 심판청구를 제기함.

[판단] 제8504.40-3010호 내지 제8504.40-3090호는 그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은 그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되는 용도세율 대상으로 보임.

용도세율의 적용승인을 받는 물품의 사후관리 등을 정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가 제8504.40-3010호를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도 제8504.40-3010호와 제8503.40-3090호가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고, 2020. 7. 1. 개정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도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으로 명시하고 있음.

「관세법」 제83조 제1항은 ‘관세법 제73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의 경우 용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기기용은 물론 다른 전기기기를 위한 용도로 모두 사용할 수 있음.

HSK와 양허세율 규정은 어떤 물품에 객관적인 성질상으로 어떤 용도로만 또는 주로 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품명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제8504.40-3010호의 품명에는 그러한 문구가 없는 등의 사유로 대법원에서 동일쟁점에 대하여 제8504.40-3010호로 판결(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두30344 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TKC 코멘트]

- 쟁점물품은 휴대폰 기기의 충전을 위해 제조단계부터 설계되었고, 수입 후에도 휴대폰의 충전기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제품임.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같은 물품을 노트북이나 디지털카메라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쟁점세번의 경우 제8504.40-3010호와 제8504.40-3090호의 세율을 용도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고, 용도세율 제도의 취지가 범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전제로 하되 주된 용도 사용을 전제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물품은 설계부터 판매까지 주된 용도를 입증하여 제8504.40-3010호로 신고하고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전량 전기통신용도로 판매되었으므로 제8504.40-301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이미 동 조세심판원은 기존 동일물품에 대해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20두30344 판결에서 동일하게 다루어진 사안임.

삼성KPMG 세무본부
Tax Knowledge Center

kr-fmtaxtkc@kr.kpmg.com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